

「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- 강소」 수출물류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

2023년 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- 강소」 지역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인 수출물류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, 대구광역시장, (재)대구테크노파크원장

1 지원개요

□ 지원대상 : 38社

- '20 ~ '22년 지정된 대구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28社
- '23년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- 강소 기업 10社

□ 지원기간 : '23. 6. 1. ~ 8. 31.

□ 지원규모 : 15社 정도(1社당 최대 5백만원)

※ 신청기업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,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예정

□ 지원목적 : 최근 해상·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

□ 지원내용 : 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수출물류비 지원

구분	수출물류비		
세부지원내용	지원분야	지원항목	비고
	· 국제운송비 · 내륙운송비 · 창고보관료 · 보험료	· 해상 및 항공운송료 · 해외내륙운송료 · 해외창고보관료 · 항공운송 및 해상적하 보험료	· 추가할증료(유류할증료, 저유할증료, 보안할증료, 성수기할증료) 포함 · 현지 내륙운송료는 국제운송조건(INCOTERMS 기준) D조건에 한함

지원제외 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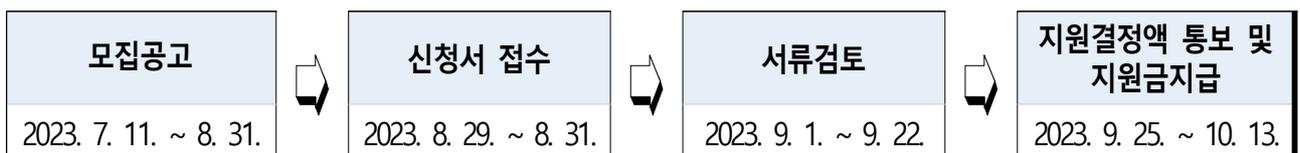
-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(INCOTERMS 2020) E, F조건
- 현지 통관료 :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
- 우체국 특송 서비스(EMS, 기업화물 서비스 등)
- 국내 운임 및 취급 수수료(위험물 취급수수료 등)
-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
- 관세,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
- 각종 문서 송달비용
-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(해외→해외)운송료
- 무상거래 샘플 운송
- 수출기업이 어음 등으로 수출물류비를 결제한 경우
-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

2 지원조건

- 운송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 가능
-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(INCOTERMS 기준) C,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 거래에 소요된 수출물류비 지원
 - ※ C,D조건 : CFR, CIF, CPT, CIP, DAP, DPU, DDP, DDU 등
- 수출기업이 2023. 6. 1.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先 집행완료한 후,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※ 수출일자는 선하증권(B/L)의 선적일 기준
- 정산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하며,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
 - ※ 2023년 대구테크노파크가 시행한 ‘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’ 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‘20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’ 에서 지원 받지 않은 기업 우선 지원
 -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: 대구테크노파크-제20230404-109호
 - 20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공고 : 중소벤처기업부-제2023-336호

3 추진절차

- 별도의 선정평가는 없으며, 접수순으로 지원예정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□ 공고기간 : 2023. 7. 11.(화) ~ 8. 31.(목) 까지

□ 접수일자 : 2023. 8. 29.(화) ~ 8. 31.(목), 17시 까지

□ 신청서 교부

○ (재)대구테크노파크(<https://dgtp.or.kr/>) > 알림마당 > [사업공고]

※ 신청결과에 따라 접수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ojh@dgtp.or.kr)

※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○ 사업담당자 : 옥정화 선임연구원 (☎ 053-757-3739 / ojh@dgtp.or.kr)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신청서	PDF, 한글파일
2	수출 물류비 세부 신청 내역서	PDF, 엑셀파일
3	수출신고필증(최초 한국→해외목적지 운송물품)	
4	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WB)	
5	운송기업 인보이스(Freight Invoice) - 운송기업(포워드사) 발행 인보이스 (세부 지출항목 명시) - 운임내역 항목 구분 가능해야하며 발급자 날인 또는 서명 필수	
6	활용 물류사(포워드사)등에서 발행한 (전자)세금계산서 - DHL 등 특송인 경우 지로영수증 제출 가능 참여기업의 소요비용 先집행 증빙자료(이체확인증, 은행발행) - 참여기업→선사/항공사 or 참여기업 →포워드사 이체 증빙 - 운송기업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해야하며, 타 수출건과 합하여 지급한 경우 입금확인증(운송기업 발행) 추가 제출 - DHL 등 특송의 경우 법인카드전표 제출 가능	
7	적하보험증권(수출자가 보험료 부담시에만)	해당시
8	지체증빙(지체료 발생기업 해당) - 선사 또는 항공사에서 포워드사 또는 화주기업에 청구한 지체료 관련 인보이스 또는 청구서	해당시
9	통장사본 - 지원금 받을 기업명의로 계좌	

연번	제 출 서 류	비고
10	중복지원금지 협약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

※ 1~10번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하며, 반드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
신청서와 물류비 세부 신청 내역서는 한글, 엑셀 파일로도 제출

5 기타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 대상

- 공고한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
- 사업 기간 내 대구시 이외 지역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기업
- 사업 기간 내 글로벌 중소기업 지정 해제된 기업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또는 대표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된 경우
-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허위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'지원제한', '지원중단', '지원금 환수' 등을 할 수 있음

6 문 의 처

-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업육성지원센터 옥정화 선임연구원
(☎ 053-757-3739 / ojh@dgtp.or.kr)